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472

제출연월일 : 2009. 4. 27.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미술관 무료관람 확대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상표등록 지정상품 판매의 명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상품의 산업화 등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함(안 제6조제1항).

나. 무료관람의 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2항).

다.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상표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(2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3) 입법예고 : 2009. 4. 4. ~ 4. 13. / 접수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조례 제　　호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. 이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한다.

제6조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꿈나무 사랑카드 소지자.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.

10.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

제6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시장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한 전시는 예외로 한다.

제9조의2의 제목 “(전시홍보물의 판매)”를 “(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)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・제2항 및 제3항중 “전시홍보물”을 각각 “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”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중 “판매대금”을 각각 “판매금액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관람료 면제) (생략)	**제6조(관람료 면제)** ① (현행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	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. 이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한다.
5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9.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.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.
<신설>	10.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
9. (생략)	11. (현행과 같음)
<신설>	②시장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한 전시는 예외로 한다.
제9조의2(전시홍보물의 판매) ①관장은 미술관에서 대내·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, 팜플릿 및 영상물 등의 전시홍보물을 판매할 수 있다.	**제9조의2(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판매)** ①---------- ---- ----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---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판매업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, 판매대금은 대전광역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수입으로 한다.	②----------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---------- ----------판 매 금 액 ---------- ----------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시홍보물의 판매대금과 위탁판매 조건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.	③----------전시홍보물과 상표등록 지정상품---판 매 금 액----------

관련법규

□ 장애인복지법

제30조 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,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, 공공시설 이용료감면,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상표법

제50조 (상표권의 효력)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.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09년 5월 20일
행정자치위원회

Ⅰ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년 4월 27일 대전광역시장
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4월 28일

3. 상 정 일 자 : 제182회 대전광역시의회(임시회)
제4차 행정자치위원회(2009. 5. 20)
상정, 심사, 수정가결

Ⅱ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문화체육관광국장 김낙현)

1. 제안이유

미술관 무료관람 확대를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상표등록 지정상품 판매의 명문화를 통한 지역문화상품의 산업화 등 미술관 운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확대함(안 제6조제1항).

나. 무료관람의 날 지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(안 제6조제2항).

다. 상표등록 지정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2).

Ⅲ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박춘용)

○ **본 개정 조례 안은**

「장애인동반자 1인」, 「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」, 「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」를 관람료 면제 대상자로 추가하고, 무료관람의 날을 지정 운영하며, 상표등록 지정상품 판매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

○ **본 개정 조례 안 검토결과**

장애인 편의도모, 명예시민 예우강화,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,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이응노 미술관 등 지역특화 미술상품의 산업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됨.

Ⅳ. 토 론 요 지 : 생 략

Ⅴ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Ⅵ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Ⅶ. 수 정 내 역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472

제안연월일 : 2009. 5. 20
제 안 자 : 행정자치위원장

1. 수정이유

관람료 면제 대상에 명예시민 배우자를 포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명예시민증소지자 관람료 면제 시 후단을 추가함. (안 제6조제1항제10호).

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전광역시립미술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1항제10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6조(관람료 면제) (생략)	**제6조(관람료 면제)** ① (현행과 같음)	**제6조(관람료 면제)** ① (개정안과 같음)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	1. ~ 3. (개정안과 같음)
4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	4.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. 이 경우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인을 포함한다.	4.(개정안과 같음).
5. ~ 8. (생략)	5. ~ 8. (현행과 같음)	5. ~ 8.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9.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.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.	9. 꿈나무사랑카드 소지자. 이 경우 카드에 등재된 사람을 포함한다.
<신설>	10. 대전광역시 명예시민증 소지자. (후단신설)	10. ----------. 이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.
9. (생략)	11. (현행과 같음)	11. (개정안과 같음)
<신설>	②시장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을 무료관람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제5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관람료를 다르게 정한 전시는 예외로 한다.	② (개정안과 같음)

Ⅷ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